

##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관서(벤더기업용) 개정대비표

### 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<b>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관서</b> (벤더기업용)</p> <p>주식회사 <b>하나은행</b> 앞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1차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된 상생벤더구매론 약정에 기초하여 _____(이하 “본인” 또는 “벤더기업”이라 합니다)은 2차 협력기업 또는 상위 벤더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(이하 “물품 등”이라 함)의 납품대금 수금을 위하여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<b>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</b> 및 「<b>동 시행세칙 제6편 B2B 상거래정보</b>」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16 조(관할법원의 합의) 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벤더기업]: _____(인) 주 소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상생벤더구매론 벤더기업 거래신청서</b></p> <p>1~2. (기재생략) 3.첨부서류 (1) (기재생략)</p>	<p><b>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관서</b> (벤더기업용)</p> <p>주식회사 <b>하나은행 귀중</b></p> <p><b>[귀 행]</b>과 1차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된 상생벤더구매론 약정에 기초하여 _____(이하 “본인” 또는 “벤더기업”이라 합니다)은 2차 협력기업 또는 상위 벤더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(이하 “물품 등”이라 함)의 납품대금 수금을 위하여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<b>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</b> 및 「<b>동 시행세칙 제6편 B2B 상거래정보</b>」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16 조(관할법원의 합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벤더기업]: _____(인) 주 소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상생벤더구매론 벤더기업 거래신청서</b></p> <p>1~2. (현행과 같음) 3.첨부서류 (1) (현행과 같음)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

<p>(2)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개인인감증명서(본인 자서 날인시 생략가능), 대표자 실명확인증표</p> <p>(3)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</p> <p>① (기재생략)</p> <p>② 개인사업자 : 위임장(개인인감 날인), 개인인감증명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</p> <p>(4) ~ (5) (기재생략)</p> <p>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(벤더기업) : _____(인)</p>	<p>(2)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개인인감증명서 <u>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 자서시 생략가능)</u>, 대표자 실명확인증표</p> <p>(3)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개인사업자 : 위임장(개인인감 날인 <u>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</u>), 개인인감증명서 <u>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</u>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</p> <p>(4) ~ (5) 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(벤더기업) : _____(인)</p>	<p>문구추가 및 수정</p> <p>문구추가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개정 시행일 : 2018년 7월 23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